



공모형 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(퇴직연금)

원금
손실가능
상품

※ 본 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.

본 설명서는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 외 판매사가 고객님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부 받으신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주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1 | 가입정보

상품명	키움글로벌차세대페이먼트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C-P2e		판매사가 부여한 위험등급	높은위험(2등급)	
상품의 내용	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(간이)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			
투자 위험 등급의 의미	위험등급		위험등급의 의미		
			투자자산 기준	변동성 기준	
	1 등급	매우 높은 위험	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이20%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	25% 초과	유의사항 위험선도도가 (매우)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(매우)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,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, 예·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,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,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	2 등급	높은 위험	①고위험자산에 8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	25% 이하	
	3 등급	다소 높은 위험	①고위험자산에 80%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이20%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	15% 이하	
	4 등급	보통 위험	①고위험자산에 50%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최소60%이상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	10% 이하	
	5 등급	낮은 위험	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	5% 이하	
6 등급	매우 낮은 위험	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②단기국공채등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	0.5% 이하		

※ 해당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: 투자대상자산 및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분류됩니다.

주요 내용	① '투자대상자산 기준'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의미합니다. ② '수익률 변동성 기준'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,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-------	---

2 | 가입관련 안내

구분	내용
고객별 한도안내	2020년 9월 28일 제정된 「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」의거,비예금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상품별/고객별 상품 가입 및 추가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3 |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(비교표)

※ **집합투자증권(펀드)**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 3에서 정의하는 「투자성 상품」에 해당합니다.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「예금성 상품(예·적금)」과는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.

- ① **(원금비보장)**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**원금손실위험**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**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**
- ② **(수수료)**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선취수수료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.
- ③ **(보수)**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고객님의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.
- ④ **(해지시 불이익)** 집합투자증권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투자원본보다 작아질 수도 있으며 환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부담하게 됩니다.

[참고: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별 분류]

증권펀드	부동산펀드	특별자산펀드	혼합자산펀드	MMF
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	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	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	운용에 있어서 증권·부동산·특별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	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

4 | 상품 설명내용

구분	내용
기대수익	-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변동에 따라 수익·손실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수익의 제시가 불가능합니다. 단, 상품의 수익구조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기대수익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. (ELF, 목표전환형 펀드 등의 경우)
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 추정액	- 펀드는 편입자산의 시가평가에 따라 원금의 0%~100%(원금 전액 손실)손실 발생 가능합니다.
계약 종료 요건	- 계약상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만기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5 | 민원·상담이 빈번하여 속지가 필요한 사항

Q1. 기준가 적용일 관련(매입, 환매 시)

➔ 고객님의 매입·환매를 신청하신 시간 및 상품에 따라 ①기준가 적용일, ②매수 완료일, ③환매대금 지급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.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 각 상품의 (간이)투자설명서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2. 상품별 유의사항

➔ **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**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6 | 고객님의 권리보호 안내

<p>청약철회의 기한, 행사방법, 효과 [고난도금융투자상품限]</p>	<p>·투자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모집 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(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, 청약이 철회된 경우,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,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.</p> <p>·[주의] 모집 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설정일 전 영업일 17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며, 대기시간 및 전산 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 [외화로 투자되는 상품은 15시까지입니다.]</p> <p>※ 고난도금융투자상품 :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기초자산의 특성, 가격 결정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%를 초과하는 상품.</p>	
<p>위법계약해지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 ·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	
<p>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</p>	<p>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, 고객센터 (02-2008-5000) 및 홈페이지(www.woori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</p>	
<p>자료열람 요구권 안내</p>	<p>고객님께서서는 당행의 「자료열람요구에대한 처리 절차」에 의거하여,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	
<p>설명 의무 이행 확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입하신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판매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. 	<p>판매 직원</p> <hr/> <p>(인/서명)</p>